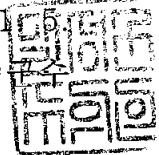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번 호	705
-------------	-----

제출일자 : 2011.05.16.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정하게 수렴, 관리, 대응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3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안 제4조, 제5조)
-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수립(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1.4.26. ~ 2011.5.16.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